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인지도 조사 연구

김 은 주\*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A Survey on Recognition of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Eun Joo Kim\*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harmful business places around schools and to survey and analyze how much middle school students know about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which have not been much effective.

**Methods:** In addition, this study clarified the problem of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by inquiring into students' value and perception on worsening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nd provided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making policies on school education and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se purpos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1,000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on their perception on harmful environment around their schools, and drew conclusions as follows.

**Result:**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School Health Act was low, and they generally thought that the law does not play its role substantially and efficiently in purifying and regulating harmful environment and regulations are superficial and temporary. To the question of whether harmful businesses observe laws for purifying environment around schools, most of the students replied negatively. In actuality, as most of harmful businesses running at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are stationeries with game rooms, comic book stores, PC rooms, etc., which are highly accessible to students, they become serious problems in school environment.

**Conclusion:** As it is required to make continuous and systematic surveys and researches on the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we need to manage school environment efficiently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education offices and individual schools.

Key words: school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

(2007년 9월 18일 접수, 11월 19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Eun Joo Kim,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Sang-ri 14 Bongdam-up Hwasung-si 445745 Kyunggi-do  
Tel: 82-31-299-0751 FAX: 82-31-297-3697 E-mail: albert@uhs.ac.kr

## 1. 서 론

학생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므로 학교 내의 환경 및 학교 주변 환경의 영향력은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의 생활의 장은 학교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등·하교 길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학교 주변에서 보내므로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손애리, 2000).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그간 학교 측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유해환경의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 출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며, 그 결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환경과 잦은 접촉을 통해 범죄성을 심어 주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002년 소년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행이 25.8%로 가장 많고, 유희비 마련 등의 범행이 16.2%, 다음으로 부주의가 13.5%, 취중 호기심이 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부, 2003). 이처럼 유희비 마련이 범행동기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 내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외 주변 환경에까지 확산되었고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관리와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의 효율화를 기할 목적으로 이미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 1928호로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였으며 학교주변 비교육적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학교보건법상 제 5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을, 제6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학

생이나 학부모, 관련업주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알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과정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상욱, 1996).

전건주(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됐거나 무단 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해업소가 9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각급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유해업소가 40곳에 이르고 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 중인 유해업소도 56곳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게임장이 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화방 12개소, 유희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각 2개소 등이었으며 성인용품점도 2개소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이 같은 유해업소에 대해 일부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 등의 조기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전이나 폐쇄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2005)에 의하면 전국 2만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5만2천여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희·단란주점(28%), 노래연습장(19%), 숙박업소(16%), 당구장(11%), 멀티 게임장(10%)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넘쳐나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엄격히 하고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유해업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러한 유해업소들이 법에 위배되는 지도 모른 채 당연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청소년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게 되었으며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화, 규제, 단속, 감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새롭고 건전한 학교주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둔다.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자극하고 충동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환경 정화는 학생 지도의 효율화와 학업 성취도의 극대화는 물론 학생들의 원만한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중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해 보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날로 심해져 가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식도를 높임으로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A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3개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 1, 2, 3학년 남녀 총 1,021명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 및 양해를 구한 뒤, 각 학급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설문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이 자의로 기재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회수하였다.

### 2. 연구도구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인식, 학교보건법과 법규에 관한 인지도, 일반적인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행과정은 첫째, 학교주변 유해환경 연구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내용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둘째,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3개교를 무작위로 남학생, 여학생 총 1,0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에 대한 인식을 설문작성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셋째, 경기도 A시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 실태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자료인 박진근(1998)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2000)의 연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첫째, 표본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4개 문항으로 성별, 학년, 학교소재지, 학교위치를 조사하였다.

둘째, 유해환경 관련 5개 문항은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과 의식조사를 위한 내용으로 조사되었으며, 셋째, 법규와 관련된 3개 문항은 학교보건법과 유해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관련 문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수가 얼마나 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와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 x<sup>2</sup>-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1,021명 중 조사결과에 분석된 대상자 수는 1,000명으로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49.2%(492명), 여학생이 50.8%(508명)로 나타났다. 학년별 학생 분포는 1학년 31.2%(312명), 2학년 38.9%(389명), 3학년 29.9%(299명)로 2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는 B 중학교 30.5%(305명), H 중학교 35.3%(353명), K 중학교 34.2%(342명)로 나타났다.

학교위치별 응답학생 수는 유흥가 주변 20.0%, 주택가 주변 33.0%, 공원 주변 24.0%, 시장·상가 주변 22.0%로 응답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492	49.2
	여	508	50.8
학년별	1 학년	312	31.2
	2 학년	389	38.9
	3 학년	299	29.9
소재지	B 중학교	305	30.5
	H 중학교	353	35.3
	K 중학교	342	34.2
	유흥가 주변	203	20.0
학교위치	주택가 주변	334	33.0
	공원 주변	236	24.0
	시장·상가 주변	224	22.0
	무응답	3	0.1
	전체	1,000	100.0

## 2.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35.6%),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27.5%), 그저 그렇다(14.7%)의 순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32.3%), 나쁘게 생각한다(20.5%),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생각한다(13.4%)의 순으로 학생들의 52.8%가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였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매우 심각하다(36.5%), 대체로 심각하다(31.5%)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에 대해 매우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통이다(33.7%), 나쁜 편이다(27.2%), 매우 나쁜 편이다(9.7%), 좋은 편이다(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결과 확실히 그렇다(24.0%), 그렇다(22.0%), 조금 그렇다(16.9%)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학생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275	27.5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356	35.6
그저 그렇다	147	14.7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8	9.8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9	6.9
무응답	55	5.5
주변유해업소에 대한 인식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	323	32.3
나쁘게 생각한다	205	20.5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생각한다	134	13.4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131	13.1
전혀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114	11.4
무응답	93	9.3
유해업소에 대한 심각성		
매우 심각하다	365	36.5
대체로 심각하다	315	31.5
그저 그렇다	181	18.1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92	9.2
거의 심각하지 않다	47	4.7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매우 좋은 편이다	95	9.5
좋은 편이다	115	11.5
보통이다	337	33.7
나쁜 편이다	272	27.2
매우 나쁜 편이다	181	18.1
환경개선의 필요성 인식		
확실히 그렇다	240	24.0
그렇다	220	22.0
조금 그렇다	169	16.9
조금 그렇지 않다	160	16.0
그렇지 않다	176	17.6
전혀 그렇지 않다	35	3.5
전체	1,000	100.0

###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모른다(45.3%),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적은 있다(22.4%), 알고 있다(16.7%)의 순으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정의를 제대로 아는 응답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983명(98.3%), '예'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7명(1.7%)이었다. 이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식교육은 학교에서 거의 실행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학교에서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 교육의 필요성을 학교보건교육 차원에서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주변 업소들이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법을 얼마나 준수하는 것 같은지의 질문결과 준수하지 않는다(23.9%), 조금 준수한다(19.9%), 준수한다(17.5%)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주변 업소들이 환경정화를 위한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표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식	빈도	백분율 (%)
알고 있다	167	16.7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적은 있다	224	22.4
모른다	453	45.3
무응답	156	15.6
교육 실시여부		
예	17	1.7
아니오	983	98.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식	빈도	백분율 (%)
주변업소들의 법의 준수		
확실히 준수한다	106	10.6
준수한다	175	17.5
조금 준수한다	199	19.9
조금 준수하는 것 같다	156	15.6
준수하지 않는다	239	23.9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125	12.5
환경정화를 위한 법의 영향과 역할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법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95	9.5
약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156	15.6
별로 역할을 못한다	290	29.0
전혀 역할을 못한다	115	11.5
잘 모르겠다	344	34.4
전체	1,000	100.0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모르겠다(34.4%), 약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15.6%), 별로 역할을 못한다(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의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법에 대한 영향과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실태 인지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3개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실태에 대한 인지도를 실시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로 설정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을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결과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만화방, PC방, 노래방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 학교주변 50m내 유해업소 분포도

내 용	빈 도	순 위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	598	1
만화방	462	2
PC방	442	3
노래방(노래연습장 포함)	386	4
호프집 및 소주방	342	5
비디오방	268	6
전자 오락실(DDR, PUMP 포함)	264	7
골프연습장, 사격장	182	8
카페, 커피	180	9
당구장	176	10
롤러스케이트장	162	11
단란주점	150	12
액화천연가스 판매소 및 주요소	150	12
무도장(사교춤, 댄스교습소 포함)	148	13
공장공해업소(매연,소음등)	128	14
성인 오락실	124	15
숙박 시설(여관, 호텔, 여인숙 등)	122	16
나이트 클럽(디스코장)	120	17
퇴폐이발소	120	17
경마장	98	18
극장(소극장 포함)	98	18
전화방	84	19
담배자판기	82	20
성기구 취급(판매)업소	80	21
안마시술소	80	21
음란물노점상	80	21
오물수집장소	66	22
전염병 요양소 및 진료소	64	23
가축 시장	52	24
동물사육장, 도축장/화장장	46	25
사창가(매춘행위 가능장소)	37	26
퇴폐목욕탕(터키탕)	30	27

주) 복수응답 결과임

두 번째로, 학교주변 200m내(상대정화구역) 유해업소 분포도를 보면 PC방이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노래방, 만화방, 호프집 및 소주방, 전자오락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표4, 5에서와 같이 호프집 및 소주방,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단란주점, 숙박시설, 나이트클럽, 퇴폐이발소, 담배자판기, 안마시술소, 음란물 노점상, 퇴폐목욕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들 업소들은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업소임이 분명하였다.

<표 5> 학교주변 200m내 유해업소 분포도

내 용	빈 도	순 위
PC방	614	1
노래방(노래연습장 포함)	594	2
만화방	526	3
호프집 및 소주방	472	4
전자 오락실(DDR, PUMP 포함)	398	5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	382	6
비디오방	342	7
카페, 커피점	278	8
골프연습장, 사격장	248	9
성인 오락실	248	9
당구장	226	10
단란주점	208	11
전화방	208	11
액화천연가스 판매소 및 주요소	198	12
롤러스케이트장	172	13
숙박 시설(여관, 호텔, 여인숙 등)	158	14
극장(소극장 포함)	128	15
무도장(사교춤, 댄스교습소 포함)	124	16
나이트 클럽(디스코장)	100	17
경마장	91	18
공장공해업소(매연,소음등)	80	19
안마시술소	78	20
성기구 취급(판매)업소	66	21
담배자판기	61	22
티켓다방(외부배달 여종업원이 있는곳)	61	22
퇴폐이발소	50	23
사창가(매춘행위 가능장소)	48	24
음란물노점상	37	25
콜라텍	37	25
전염병 요양소 및 진료소	35	26
오물수집장소	34	27
퇴폐목욕탕(터키탕)	34	27
가축 시장	33	28
폐기물, 분뇨처리장	32	29
동물사육장, 도축장/화장장	31	30

주) 복수응답 결과임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한달 간 평균 1회 출입이 43.0%, 2~5회 출입이 43.0%, 6~9회 출입이 12.0%, 10회 이상이 2.0%, 전혀없다 1.0% 로 학생들의 한달 간 유해업소 출입횟수는 전혀 없는 경우(1.0%)를 제외하고는 1회 이상, 심지어는 10회 이상의 횟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표 6〉 학생들의 유해업소 한달 평균 출입횟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1회	431	43.0
2~5회	429	43.0
6~9회	120	12.0
10회 이상	15	2.0
전혀없다	5	1.0
전체	1,000	100.0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 주변 환경 및 환경위생정화구역 인지도 분석**

표7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 주변 환경 인식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학년, 학교위치(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주변 환경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3.60)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학교 주변 환경 인식도에 있어서 전 학년 중 가장 좋지 않다고 인식(2.80)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가 소재한 위치의 경우 “공원주변”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인식의 평균값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 상가 주변”이 3.02의 순이었으며 학교의 소재지가 “유흥가 주변”일수록 학교 주변 환경 인식도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인지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이 30.5%, 2학년이 21.2%, 1학년이 20.6%의 순으로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학교생활을 오래 경험한 학생들이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 주변 환경 인지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학교 주변 환경 인식도	t/F값	
성별	남자	3.07 ± 0.69	0.755
	여자	3.01 ± 0.62	
학년별	1학년	3.60 ± 0.61	8.716**
	2학년	2.93 ± 0.62	
	3학년	2.80 ± 0.71	
학교소재지	B중학교	3.10 ± 0.67	0.407
	H중학교	3.03 ± 0.64	
	K중학교	2.95 ± 0.64	
학교위치	유흥가주변	2.77 ± 0.76	5.669**
	주택가주변	2.89 ± 0.62	
	공원주변	3.37 ± 0.78	
	시장상가주변	3.02 ± 0.50	
유해업소출입횟수	1회	2.67 ± 0.59	1.580
	2-5회	3.29 ± 0.61	
	6-9회	3.08 ± 0.54	
	10회 이상	2.98 ± 0.68	
	전혀없다	2.99 ± 0.78	

\* p<0.05 \*\* p<0.01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횟수별로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자는 유해업소에 전혀 출입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인지도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27.7%, 2-5회가 25.1%, 6-9회가 20.9%, 10회 이상이 14.7%로 유해업소 출입횟수가 높을수록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lt;표 8&gt;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위생정화구역 인지도

(단위: 명, %)

		명	알고 있다	들은 적은 있다	모른다	$\chi^2$
성별	남자	492	21.5	58.7	19.8	1.37
	여자	508	23.0	54.9	22.1	
학년별	1학년	312	20.6	56.6	22.9	12.68*
	2학년	389	21.2	55.6	23.2	
	3학년	299	30.5	57.6	11.9	
학교소재지	B중학교	305	40.9	31.8	27.3	9.351
	H중학교	353	36.4	32.8	30.8	
	K중학교	342	36.8	36.4	26.8	
학교위치	유홍가주변	203	38.2	36.2	25.6	24.283
	주택가주변	334	37.5	37.5	25.0	
	공원주변	236	34.3	31.8	33.9	
	시장상가주변	224	51.8	28.3	19.9	
유해업소출입횟수	1회	431	27.7	59.6	12.8	38.10***
	2-5회	429	25.1	62.0	12.8	
	6-9회	120	20.9	55.3	23.8	
	10회 이상	15	14.7	59.2	26.1	
	전혀없다	5	39.7	31.7	28.6	

\* p&lt;0.05 \*\*\* p&lt;0.001

#### IV. 고 찰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산업발전으로 인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요인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 내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외 주변 환경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

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이며,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는령제4조의 3에 의해서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하에 각각 설치(9인 이상 15인 이내)하고, 관련기관 공무원, 학부모대표(1/2이상), 지역사회 유지로 구성(교육감이 조례로 정함)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금지된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 등 정화조치요청이 가능하고, 정화 조치를 한 경우



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령 제5조에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그 법적근거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고, 다른 법률의 관련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해 원활한 시행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화구역의 설정이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당구장, 극장 등 일부 시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바 있고, 학교 신설이나 새로이 금지시설을 추가하면서 기존에 적법하게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주변 환경 법규는 모든 교육기관의 학생을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보건·위생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연 등의 공해로부터 보호,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비되어 가야할 것이다.

현재, 학교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계 조항이 기본조항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에서 특정행위와 시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행위와 시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대개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나 시설들로서, 오늘날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공해, 교통위험, 그리고 범죄 등 학교주변환경 악화현상에 대응한 규정으로서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조사(2000)에 의하면 학교 주변환경에 대해 불만족(32.6%)을 표시하는 학생의 비율이 만족(23.5%)을 표시한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박재윤(1992)은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 유해환경에 대한 법규와 범조항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앞으로 법규의 정비 방향에 대한 현실감 있는 법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각급 입법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련조항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학교환경관계법규정비위원회'같은 기구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주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 곳, 당구장, 다방, 술집, 디스코, 극장 및 유흥가 등(김준호, 1987)과 같은 오락업소 중심의 물리적 환경이나 청소년 잡지, 만화, 신문 등 대중매체와 같은 정보환경의 유해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대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 건전성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자극 중심의 유해성 요인 인식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성적 관련 사항이나 문제의 거론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기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전통적 문화풍토는 통념적으로 유해환경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있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없이 사회적 유해환경으로 인식되게 하기도 한다(도종수, 1990).

한편 한준상(1991)과 강대근(1984)은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 환경 요인 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영향과 반응관계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로 보면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요소들 즉, 사회 심리학적 개념요소, 문화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들로서, 상호 작용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해환경은 학동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해환경규제의 주된 목적이 소극적으로는 각종 환경의 유해성으로부터 학동기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선량한 행위를 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상황과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유해성을 척결하고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장조건을 형성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무교육적, 탈교육적, 비교육적인 각종 환경공해

로부터 인간 생존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며 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철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사회적 관리가 원칙적으로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내용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자칫 그들을 어느 특정 장소나 환경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잘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강권적인 규제와 금지수단 및 설득적인 수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의 규제는 청소년을 사회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도 사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교육적 노력들과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유해환경의 규제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이나 풍속환 경과 관련된 업주들의 자율적 통제 관리 형태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할 거리나 관심거리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대한 자각과 억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은 1967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10차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인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 활동의 변화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보건법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 19조 벌칙 등의 3개 조항만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현재의 학교보건법은 대부분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내 환경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보기 어렵다(전의찬, 1999).

또한 현행의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과 그에 따른 운영은 학교보건법의 일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학교보건법의 유일한 벌칙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동법 안에 있는 여타의 조항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법 조항을 학교보건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 형태의 법률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독립된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화여자대학교(2000)의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장조사인 본 연구결과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게임제공업 시설 73.9%, 유흥주점/단란주점 17.4%, 노래연습장 4.3%, 호텔/여관/여인숙이 4.3%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사에서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이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과 같다.

또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시설, 당구장, 사행 행위장, 호텔/여관/여인숙,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 액화가스저장소,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가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도 동일한 연구결과였다.

또한 박태은(2003)의 연구에서 멀티게임장이 76.3%, 비디오감상실 4.9%, 숙박업소 3.5%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유흥주점/단란주점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시설, 당구장, 사행행위장, 호텔/여관/여인숙,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 액화가스저장소,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의 순이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서는 유해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업주들의 학교보건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학생들의 이용, 학교보건법의 실제적 역할의 기능 부재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주들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학교보건법의 강화 또한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학교 주변 환경 악화현상에 대응하여 관계법규는 모든 교육기관의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건·위생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해, 교통사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현하는 법규로 바뀌어 가야 한다.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유발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조사는 학교 유해 환경 실태를 고발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 V. 결론

경기도 소재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지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학교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태도 대체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해환경이 법에 의한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법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법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고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단속하는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단속으로 인해 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유해업소가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법의 준수를 지키는가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으며, 실제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유해업소의 대부분은 학생

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오락실이 설치된 문구점, 만화방, PC방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한편 노래방, 롤러스케이트장, 비디오 가게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 규정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대상은 교육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 주변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법규 중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정비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해환경을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유해환경 전체로부터 학생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가 유해환경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학교, 학부모,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전체의 연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강대근(1984). 청소년의 사회 문화적 환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7장, 42-45.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통계연감, 1-32, 교육인적자원부.
- 김상욱(1996). 학교주변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법과 행정기반,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2), 127-138.
- 김준호(1987). 청소년주변유해환경과 비행 선도 방안, 37-52,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 김은주(2007).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위반사례 실태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8(1), 30-42.
- 김흥주(199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연구:

-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청소년연구 8(2), 47-61.
- 도종수(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17,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24-51,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2003). 청소년백서, 78-94, 문화체육부.
- 박재윤(1992). 법규면에서 본 교육환경, 교육월보, 129(29~30).
- 박순희(1993). 학교주변유해업소의 실태와 대책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내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41, 서울.
- 박주현(1991). 청소년유해환경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47, 서울.
- 박진근(1998).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57.
- 박찬수(200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41, 서울.
- 박태은(2003).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학교보건법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21.
- 손애리(20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단, 46-65.
- 양명숙(1993). 대구지역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유해업소 실시조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9-38.
- 이화여자대학교(20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단, 7-82.
- 이정란, 안숙희(2005).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교육적 과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8(1), 43-58.
- 전건주(200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1,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37-49.
- 한준상(1991).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23-44, 서울:연대출판부.
- 홍제성(2005).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교육적 과제", 교육월보, 117-123.
-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42-58.